



보도참고자료

보도일시	2009. 4. 13(월) 배포시		
배포일시	2009. 4. 13(월) 14:00	담당부서	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
담당과장	김경희 (2150-4250)	담당자	김만수 사무관(2150-4253)

제목: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시행령 개정

- 정부는 교통세(국세)에 부가적으로 과세(교통세액의 30%)되고 있는 주행세(지방세)를 재원으로 하여 버스·택시·화물차에 대해 2001년 이후 유류세 연동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,
 - 2008년 고유가극복대책에 따라 버스·화물차·농어민 등에 대해 기준가격(경유가격 1800원/ℓ) 이상으로 경유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유가연동 유가보조금을 2009.6.30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해 오고 있음
- 최근 국제원유가격 하락에 따른 경유가격 하향안정으로 금년에는 유가연동 유가보조금 지급소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
 - * 경유가격 추이(원/ℓ) : 1,933('08.7.4주) → 1,673('08.9.1주) → 1,316('09.4.1주)
- 이에 따라 정부는 유가보조금 소요재원에 맞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의 주행세율을 인하하는 대신, 전체 유류세 부담이 현행 수준이 유지 되도록 교통·에너지·환경세율의 탄력세율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
 - * 총 유류세(휘발유 745원/ℓ, 경유 528원/ℓ, VAT 제외)는 불변
주행세율 인하(30% → 26%), 교통세율 인상(휘발유 514원 → 529원, 경유 364원 → 375원)

○ 그러나 교통세·주행세율을 조정하더라도 총 유류세율은 변동이 없으므로 국민들의 세부담에는 변화가 없고, 주행세입(지방세입)과 교통세·교육세입(국세수입)간 배분만 변동됨

□ 정부는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시행령(교통세율 조정) 및 지방세법 시행령(주행세율 조정) 개정안에 대하여 4월 중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절차를 완료하고,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예정임

기획재정부 대변인